

■ 전과법 시행령 [별표 27의2] <신설 2024. 7. 23.>

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(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과징금을 산출하는 경우 법 제58조의7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과징금 부과금액은 업무정지를 받은 지정분야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.
- 다.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지정분야별 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5억원으로 한다.

2. 과징금의 산정방법

과징금 부과금액	=	$\frac{\text{연간 매출액}}{365}$	×	$\frac{\text{업무정지 일수}}{\text{일수}}$	×	(기준경비율 + 영업이익률)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

- 가. “업무정지 일수”는 별표 24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분야의 기간(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)을 말한다.
- 나. “연간 매출액”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신규 지정 등의 이유로 1년간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 순으로 연간 매출액을 산출·조정한다.
- 다. “기준경비율”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4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 중 기술검사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말한다.
- 라. “영업이익률”은 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·발표하는 기업 경영분석에 따른 가장 최근 연도의 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말한다.